

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52
----------	-----

2011년 7월 8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6월 10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5일
- 다. 상정결과 :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2011년 6월 28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국장 서강석)

가. 제안이유

지역자원시설세(구 공동시설세)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, 토지 및 선박으로 열거한 다음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정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, 그 동안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는 소방시설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뒤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부과하여 왔으나,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라 2010.12.31.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서 실제로 과세되지 않는 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에 대한 과세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개정전 조례규정으로 환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 등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34조).

다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146조
- 나. 예산조치 : 예산 수반사업이 아님.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11.3.17. ~ 2011.3.30.) 결과 : 의견 없음.
 - (2)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수석전문위원 : 박 용 훈)

가. 지역자원시설세 조문 정비(안 제34조제3항)

현 행	개 정 안
<p>제 34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~ ② (생 략) ③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에 <u>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,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.3으로 한다.</u></p>	<p>제 34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(삭 제)</p>

○ 본 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(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)에서 실제로 부과되지 않고 있는 「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」을 과세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임.

※ 종전 단일법으로 구성된 「지방세법」을 분야별·기능별로 나누어 제·개정(2010년 3월 31일 제·개정, 시행일 2011년 1월1일)한 바, ①지방세에 관한 공통적·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「지방세기본법」과 ②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「지방세법」, ③감면규정을 통합·정리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으로 분법(分法)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·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난 제228회 정례회에서 「서울특별시세조례」 등이 아래 표와 같이 제·개정된 바, 금년 1월1일자로 시행되었음.

▶ 지방세 관련 법과 3개 조례 분법안

상위법령		
종전 (1개법)		개정 (2010년7월 개정)
지방세법	제1장(총칙)	→ 지방세기본법
	제2장(도세) 제3장(시군세) 제4장(목적세)	→ 지방세법
	제5장(과세면제 및 경감)	→ 지방세특례제한법

서울특별시 조례		
현행 (2개 조례)		개정 (3개 조례)
서울특별시세조례	→	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안
	→	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	→	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※ 「지방세법」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·해저자원, 관광자원, 수자원,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,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·개선사업,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**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.**

- 행정안전부는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표준조례(안)을 시달하면서 「지방세법」이 규정하고 있는 ‘오물처리시설 등’을 과세세목으로 포함한 바, 이를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·개정시 반영하고 있음.
- 그러나 종전에는 오물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물처리공동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왔으며, 수리시설은 농촌지역에만 해당되어 서울시는 과세세목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.

※ 오물처리비용과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봉투를 판매하는 바, 판매수입은 자치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, 서울시 가구당 연간 쓰레기 처리봉투 구입비는 4,640원이며, 정화조 청소비용은 35,800원 등으로 4만원¹⁾ 정도를 부담하고 있음

- 공동시설에 ‘오물처리시설’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약1,584억원의 세입징수가 예상되는 바, 이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권고(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)에 따라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▶ 30평 아파트 보유시 지방세 내역

(단위 : 천원)

과 포 (공시가격 × 60%)	세 액					
	합 계	재산세	도시계획세	공동시설세*		지 방 교육세
				소방시설	오 물 처리시설	
203,400	568	250	203	18	47	50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(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1) · 쓰레기 처리봉투 가구당 연간 구입비: 16,565백만원(‘10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) ÷ 357만 가구(‘10년 서울통계) = 4,640원

· 서울시 30평 주택 연간 정화조(10인용, 2㎡) 청소요금(자치구 조례상 수수료 요금) 기준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지방세법 제27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1조제3항”으로 하고, “지방세법 제196조의2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24조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「서울특별시세조례」 제6조제3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 제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본문 중 “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취득세, 등록세”를 “취득세”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지방세법 제28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”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·등록세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7조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”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본문 중 “지방세법 제73조, 제75조부터 제79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, 제121

조부터 제126조”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41조 제1항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28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”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항 본문 중 “도시계획세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”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238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도시계획세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”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의 본문 중 “도시계획세”를 “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에</u> <u>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,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.3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4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삭제)</p>